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81

발의연월일: 2025. 2. 12.

발 의 자:이상휘·최은석·서일준

최수진 • 박성훈 • 이만희

정점식 · 김태호 · 박상웅

이헌승·김장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주항공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료'를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면서,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대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는 '기술료'를 연구개발 성과실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연구 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 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료'의 의미와 달라 용어상 혼란 및 법적 혼 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4호).

법률 제 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기술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의 기술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 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제17조(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②
으로 조성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	4
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국가연구개발혁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
법」 제2조제9호의 기술료를	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
말한다. 이하 같다)	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